



목 포 시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470호 2020. 12. 11.(금)

고 시

-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----- 2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공보과 ☎ 061-270-8539

목포시 공고 제 2020 - 1906호**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**

「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제정이유

-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에 조성한 해수취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

2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(안 제1조)
 -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필요한 사항 규정
- 적용 범위(안 제3조)
 - 해수공급시설로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
- 시설의 관리(안 제4조)
 -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원 장비 확보 등 규정
- 위탁관리(안 제5조)
 - 해수취수시설 사용단체 또는 해수취수시설물 관리와 운영 능력을 보유한 자에게 관리 운영 전부 또는 일부 위탁
- 해수공급의 범위(안 제7조)
 - 해수공급은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수산식품가공업체에 우선 공급
-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(안 제9조)
 -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규정

3. 제정 조례(안) : 붙임

4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
- 「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3조

5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(감사실) : 해당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(여성가족과) : 해당없음

6. 규제심사(심의) 대상 여부 검토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: 2020. 12. 11. ~ 12. 30.(20일간)

8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30일까지 목포시장(지역경제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처 : 58613,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, 지역경제과

다. 제출 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3592), 직접방문 등

8. 기타사항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지역경제과(☎061-270-887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의견 제출서

☐ 조 례 명 :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목포시 조례 제 호

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해수취수시설”이란 해수취수·여과시설 및 송수·급수관로, 자동제어 등의 제반시설을 말한다.
2. “공사”란 해수취수시설로부터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설치장소까지 연결하는 송수관 및 그 밖의 관리시설 등의 설치를 말한다.
3. “사용료”란 해수취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총 비용(전기요금, 전기안전 관리비, 수선비, 인건비 등)으로 해수취수시설을 공급받는 업체들에게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해수취수시설로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시설의 관리) 목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해수취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원,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탁관리) 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수취수시설 사용단체 또는 해수취수시설물 관리와 운영 능력을 보유한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대상범위, 위탁기간, 수탁자의 의무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제4조의 시설 관리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수탁자를 연 1회 이상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
제6조(위탁의 철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5조제2항의 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
2.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

4.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7조(해수공급의 범위) 해수공급은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수산식품 가공 업체에 우선 공급하고, 그 외의 지역은 공급 용량을 감안하여 공급할 수 있다.

제8조(해수공급 신청) ① 해수취수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는 해수취수시설까지 연결 공사를 직접 설치해야 하며, 별지 서식에 따라 시설관리자에게 해수공급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가 해수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승인을 해야 한다.

제9조(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

2. 해수공급 원수 수질불량 및 시설의 설비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
3. 해수공급시설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
4.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

제10조(사용료) 시설관리자는 해수취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사용료를 사용자 별로 부과하며, 사용자는 부과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,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」, 「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(제8조 관련)

접수번호	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				
사 용 시 설	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(해수공급)				
사 용 기 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		
사용하는 사람	성 명(남/녀) (기업명)		생년월일 사업자번호		
	주 소		전화번호		
마른김 일 생산량	천속	해수사용 공급라인	개 중 개 라인	해수 일 사용량	톤
해수사용후 정화시설	설치, 미설치		상수도 일 사용량		
신 청 사 유 (기 타)					
위와 같이 「목포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」을 사용하여 공급되는 해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성명 :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					